# 「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가족복지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핵가족화 등으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·운영과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·운영,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, 운영계획, 이용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-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- O 위탁운영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O 본 조례안은

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핵가족화 등으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.

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인한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## O 주요내용은

-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, 기능, 운영계획, 이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.

### O 검토결과

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#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공동육아나눔터"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 는 공간을 말한다.
  - 2. "가족품앗이"(이하 "품앗이"라 한다)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아이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,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, 장난감과 도

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- **제5조(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)**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
  - 2.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
  - 3.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·운영 및 활동 촉진
  - 4. 장난감 대여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
  - 5.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
- 제6조(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)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·시행하되,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
  - 2.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, 예산 집행, 모집·홍보에 관한 사항
  - 3.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 ·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
  - 5.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
  - 6.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이용자)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

우

- 3.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제8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 - 1.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
  - 2.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
  - 3.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
  - 4.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
  - 5.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  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.
  - 1. 품앗이 참여 보호자
  - 2.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보호자
  - 3.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
  - 4.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5. 수탁기관 업무담당자(위탁운영 하는 경우)
  -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

록 해야 한다.

- 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1조(위탁운영 등) ① 군수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,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평창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  - 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2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

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자체 운영규정을 제·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한 것으로 본다.